

###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b>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b> <small>[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small>	<b>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b> <small>[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small>	<b>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b> <small>[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small>
		<b>제1장 총칙</b>
		<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b>제2조(안전점검의 종류)</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p>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p> <p>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p> <p>8.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p> <p>9. “도급(都給)”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p> <p>10.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p>		
---	--	--

<p>(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p> <p>11.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p> <p>12.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p> <p>13.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p>		
		<b>제2장 기본계획 등</b>
<p><b>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b>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p>	<p><b>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b> ①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p> <p>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p>	<p><b>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b></p> <p>①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 중 공공관리주체는</p>

<p>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li> <li>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li> <li>3.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li> <li>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li> <li>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li> </ol> <p>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li> <li>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li> </ol> <p>⑤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p>	<p>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li> <li>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li> <li>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li> </ol> <p>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통보는 그 수립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lt;개정 2020. 1. 7.&gt;</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별로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⑤ 중기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li> <li>2.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li> <li>3.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성능</li> </ol>	<p>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물의 성능평가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마다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보고는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⑥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제출자료의 보고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20. 2. 21.&gt;</p>
---	---	---

는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시설물관리 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시설물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시설물관리계획의 관리주체별 수립시기·내용 등 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실시결

평가 및 유지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성능평가·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중대한 결함 등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보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확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성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8. 제28조, 제31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9. 제31조제2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0.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11.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p>보고서</p> <p>12.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 보고서</p> <p>1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lt;신설 2019. 8. 20.&gt;</p>		
<p><b>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6. 9.&gt;</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p>		<p><b>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는 해당 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 또는 해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를 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p>

<p>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b></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20. 1. 7.&gt;</p> <p>②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1.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p> <p>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p> <p>나.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p> <p>2.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p> <p>③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p>	<p><b>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요청)</b></p> <p>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p> <p>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p> <p>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해당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p> <p>2.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p> <p>3.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p>



	<p>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p>	
<p><b>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b>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p>		<p><b>제6조(설계도서 등의 제출)</b>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보수·보강을 실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이하 “서류제출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p> <p>② 서류제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명할 수 있다. &lt;신설 2018. 8. 14.&gt;</p> <p>⑥ 관리주체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8. 14.&gt;</p> <p>⑦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8. 14.&gt;</p> <p>⑧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8. 14.&gt;</p> <p>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8. 8. 14.&gt;</p>		
	<p><b>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보강의 범위)</b>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li> <li>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li> <li>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li> </ol>	<p><b>제7조(구조상 주요 부분)</b> 영 제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lt;개정 2021. 8.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량받침</li> <li>2.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li> <li>3. 하천시설의 수문의 문짝</li> <li>4.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li> <li>5.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li> <li>6. 상수도 관로이음부</li> </ol>

		7. 항만시설 중 갑문의 문짝 작동 시설과 계류시설, 방파제,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의 구조체
<p><b>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b>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lt;신설 2018. 8. 14.&gt;</p> <p>⑥ 관리주체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8. 14.&gt;</p> <p>⑦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p>		<p><b>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b> 법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20. 2. 21.&gt;</p>

<p>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8. 14.&gt;</p> <p>⑧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8. 14.&gt;</p> <p>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8. 8. 14.&gt;</p>		
<p><b>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b>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lt;개정 2020. 6. 9.&gt;</p> <p>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p>		<p><b>제9조(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절차 및 방법)</b>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범위는 영 별표 2의 서류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의 목적과 범위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열람 신청 및 열람신청에 따른 서류의 열람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20. 6. 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계 행정기관의 장</li> <li>2. 안전진단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유지관리업자</li> <li>3.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b>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b>
		<b>제1절 안전점검 등</b>
	<p><b>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b>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20. 2. 18.&gt;</p> <p>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lt;개정 2018. 12. 11.,</p>	<p><b>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b></p> <p>① 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lt;개정 2020. 12.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li> <li>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li> <li>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li> <li>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li> </ol>

	<p>2020. 2. 18.&gt;</p> <p>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p> <p>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p> <p>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p> <p>③ 삭제 &lt;2020. 2. 18.&gt;</p>	<p>관리사가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lt;개정 2020. 2. 21.&gt;</p> <table border="1" data-bbox="991 667 1449 1014"> <tr> <td>구분</td> <td></td> </tr> <tr> <td>정기안전점검</td> <td></td> </tr> <tr> <td>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td> <td></td> </tr> <tr> <td>정밀안전진단</td> <td></td> </tr> <tr> <td>성능평가</td> <td></td> </tr> </table>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lt;개정 2020. 2. 21.&gt;</p>	구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구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p><b>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b>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20. 2. 18.&gt;</p> <p>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p>	<p><b>제10조의2(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b>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본조신설 2020. 2. 21.]</p>										

	<p>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lt;개정 2018. 12. 11., 2020. 2. 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li> <li>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li> <li>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li> </ol> <p>③ 삭제 &lt;2020. 2. 18.&gt;</p>	
<p><b>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b>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lt;개정 2020. 6. 9.&gt;</p> <p>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p>		<p><b>제11조(긴급안전점검)</b>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p>

<p>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p> <p>⑤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p> <p>⑧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긴급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b></p> <p>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p>		<p><b>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b>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변경한 날부터 15일</p>



<p>관리주체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1.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제41조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확인 등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완료되어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그 밖에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상태변화 등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변경된 등급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b>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p> <p>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p> <p>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p>		<p><b>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b>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p> <p>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p> <p>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p>

<p>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p> <p>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④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lt;신설 2019. 8. 20.&gt;</p> <p>⑥ 제1항에 따른 통보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9. 8. 20.&gt;</p>		
<p><b>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b>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p> <p>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p>		<p><b>제14조(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b>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지 아니할 것</p> <p>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p> <p>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④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lt;신설 2019. 8. 20.&gt;</p> <p>⑥ 제1항에 따른 통보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9. 8. 20.&gt;</p>		
	<p><b>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b>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20. 12. 1.&gt;</p> <p>1.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p> <p>3.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p>	<p><b>제15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b>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6을 말한다.</p>

	<p>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p> <p>4.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5.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li><li>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li><li>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ol>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신설 2020. 1. 7.&gt;</p>	
--	---	--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lt;신설 2020. 1. 7.&gt;</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및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 7., 2020. 12. 1.&gt;</p>	
<p><b>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각 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 8. 20.&gt;</p>		<p><b>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b>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20. 12.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상 시설의 종류 및 명칭</li> <li>2. 대상 시설의 위치 및 규모</li> <li>3. 안전점검 등의 신청사유</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요청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안전점검 등의 실시 여부, 안전점검 등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lt;개정 2020. 12. 11.&gt;</p> <p>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날부터 30일</p>

<p>1.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 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p> <p>2.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가 시·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p> <p>3. 그 외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p> <p>④ 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신설 2019. 8. 20.&gt;</p> <p>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9. 8. 20.&gt;</p> <p>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lt;신설 2019. 8. 20.&gt;</p> <p>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신설</p>		<p>이내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lt;개정 2020. 12. 11.&gt;</p> <p>④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lt;개정 2020. 2. 21., 2020. 12. 11.&gt;</p> <p>⑤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2. 21., 2020. 12. 11.&gt;</p>
---	--	---

<p>2019. 8. 20.&gt;</p> <p>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9. 8. 20.&gt;</p> <p>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9. 8. 20.&gt;</p> <p>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9. 8. 20.&gt;</p>		
<p><b>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각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p>		<p><b>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조치계획의 제출)</b> 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획을 확인</p>

<p>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 8. 20.&gt;</p> <p>1.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p> <p>2.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가 시·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p> <p>3. 그 외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p> <p>④ 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신설 2019. 8. 20.&gt;</p> <p>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9. 8. 20.&gt;</p> <p>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lt;신설 2019. 8. 20.&gt;</p> <p>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p>		<p>한 후 보수·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 및 보고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0. 2. 21.]</p>
---	--	--



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p>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p> <p>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p> <p>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p> <p>8. 제28조, 제31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p> <p>9. 제31조제2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p> <p>10.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p> <p>11.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p> <p>12.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 보고서</p> <p>1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lt;신</p>		
--	--	--

<p>설 2019. 8. 20.&gt;</p> <p><b>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각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 8. 20.&gt;</p> <p>1.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p> <p>2.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가 시·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p> <p>3. 그 외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p> <p>④ 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p>		<p><b>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b>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2. 21.]</p>
---	--	---

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p>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9. 8. 20.&gt;</p>		
<p><b>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각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 8. 20.&gt;</p> <p>1.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p>		<p><b>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b>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20. 2. 21., 2020. 12. 11.&gt;</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내용과 방법</p> <p>2. 시설물에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치방법</p> <p>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소유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20. 12. 11.&gt;</p>

<p>2.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가 시·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p> <p>3. 그 외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p> <p>④ 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신설 2019. 8. 20.&gt;</p> <p>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9. 8. 20.&gt;</p> <p>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lt;신설 2019. 8. 20.&gt;</p> <p>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신설 2019. 8. 20.&gt;</p> <p>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9. 8. 20.&gt;</p> <p>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p>		
---	--	--

<p>관의 장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9. 8. 20.&gt;</p> <p>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9. 8. 20.&gt;</p>		
	<p><b>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b>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li> <li>2. 안전점검등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li> <li>3. 안전점검등의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li> <li>4. 안전점검등의 장비에 관한 사항</li> <li>5. 안전점검등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li> <li>6.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li> <li>7. 안전점검등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li> <li>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li> <li>9.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b>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b> 영 제17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li> <li>2. 결함부위의 획정방법에 관한 사항</li> <li>3. 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li> <li>4.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li> <li>5. 시설물 하중내하력(荷重耐荷力)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li> <li>6. 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b></p>
	<p><b>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 ①</b>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p>	<p><b>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b> 영 제18조제1항</p>

	<p>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lt;개정 2021. 1. 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시설물기초의 세굴</li><li>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li><li>3. 교량받침의 파손</li><li>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li><li>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li><li>6. 댐의 파이핑(piping: 흙·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적 균열</li><li>7.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li><li>8.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누수·파이핑 또는 세굴</li><li>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li><li>10.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li><li>11.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li></ol> <p>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lt;신설 2020. 2. 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li><li>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li><li>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li></ol>	<p>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p>
--	--	--



	<p>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p> <p>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p> <p>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20. 2. 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li> <li>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li> <li>3. 안전점검등의 실시기간과 실시자</li> <li>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내용</li> <li>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li> <li>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li> </ol>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신설 2020. 2. 18.&gt;</p> <p>[제목개정 2020. 2. 18.]</p>	
<p><b>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b>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 8. 20.&gt;</p> <p>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p>		<p><b>제20조(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b></p> <p>①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관리주체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p>

<p>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b>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b>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9. 8. 20.&gt;</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③ 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21조(위험표지)</b>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p> <p>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해당 시설물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b>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b></p>
<p><b>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b></p> <p>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20. 10. 20.&gt;</p> <p>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p>	<p><b>제22조(하도급 제한 등)</b>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0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b>제22조(하도급의 통보)</b>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하려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20. 12. 11.&gt;</p>

<p>을 수 있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⑥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⑧ 시·도지사는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6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b>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b></p> <p>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p> <p>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호</li> <li>2. 대표자</li> <li>3. 사무소 소재지</li> <li>4. 기술인력</li> <li>5. 장비</li> </ol>	<p><b>제23조(진단측정 장비)</b> 영 제23조 및 영 별표 11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는 별표 5와 같다.</p>
<p><b>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b></p> <p>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p>		<p><b>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b>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p>

<p>록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20. 10. 20.&gt;</p> <p>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⑥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⑧ 시·도지사는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6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19. 2. 25., 2021. 8.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li><li>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li><li>3. 등록분야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li><li>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사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li><li>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o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li><li>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li></ol></li></ol>
---	--	---

		<p>우</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에만 해당한다)</li> <li>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일 때만 해당한다)</li> </ol>
<p><b>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b></p> <p>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20. 10. 20.&gt;</p> <p>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⑥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b>제2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b></p> <p>①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및 종합 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p> <p>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⑧ 시·도지사는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6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b>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b></p> <p>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20. 10. 20.&gt;</p> <p>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⑥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p>	<p><b>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b></p> <p>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p> <p>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상호</li><li>2. 대표자</li><li>3. 사무소 소재지</li><li>4. 기술인력</li><li>5. 장비</li></ol>	<p><b>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b></p> <p>영 제23조제1항 및 영 별표 11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lt;개정 2020. 2. 21.&gt;</p>

<p>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⑧ 시·도지사는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6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b>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b></p> <p>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20. 10. 20.&gt;</p> <p>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lt;개정 2020. 10. 20.&gt;</p>		<p><b>제2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b></p> <p>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⑧ 시·도지사는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6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b>제34조(보고·조사)</b>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p>		<p><b>제28조(보고·조사)</b>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서류 등을 조사한 공무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조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p>



<p>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b>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b>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p> <p>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도지사</p> <p>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p> <p>② 시·도지사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행실적의 제출,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실적확인서의 발급, 대행실적 등의 공개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b>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b>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2. 11.&gt;</p> <p>1. 법 제13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p> <p>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p> <p>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적을 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신청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2. 11.&gt;</p> <p>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현황과 안전점검등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p>

<p>다.</p> <p><b>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b>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20. 10. 20.&gt;</p> <p>③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④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의营业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으로 본다. &lt;개정 2020. 10. 20.&gt;</p>	<p><b>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b></p> <p>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p> <p>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호</li> <li>2. 대표자</li> <li>3. 사무소 소재지</li> <li>4. 기술인력</li> <li>5. 장비</li> </ol>	<p><b>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b>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li> <li>2. 양수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li> <li>3.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li> </ol> <p>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합병계약서 사본</li> <li>2. 합병공고문</li> <li>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li> <li>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li> <li>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li> </ol> <p>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p>
--	---	---

		및 제31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양수인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b>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b></p> <p>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20. 10. 20.&gt;</p> <p>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⑥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⑧ 시·도지사는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p>		<p><b>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b></p> <p>①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관한 자산·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lt;개정 2020. 12.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경우</li><li>2.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li><li>3.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li><li>4.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 중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li></ol> <p>②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lt;개정 2020. 12. 11.&gt;</p> <p>③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p>

<p>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6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b>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b>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20. 10. 20.&gt;</p> <p>③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④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 &lt;개정 2020. 10. 20.&gt;</p> <p>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으로 본다. &lt;개정 2020. 10. 20.&gt;</p>		<p>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전의 실적을 승계한다.</p>
		<p><b>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b></p>
	<p><b>제30조(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b>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이하 “유지관리·성능</p>	<p><b>제32조(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b> 영 제30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p>

	<p>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지관리·성능평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li> <li>2. 유지관리·성능평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li> <li>3. 유지관리·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li> <li>4. 유지관리·성능평가 장비에 관한 사항</li> <li>5. 유지관리·성능평가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li> <li>6. 시설물의 성능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li> <li>7.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성능평가의 수준</li> <li>8. 유지관리·성능평가의 항목별 점검·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li> <li>9. 유지관리·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li> <li>10. 그 밖에 유지관리·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물의 외부환경 및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li> <li>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생애주기 관리이력에 관한 사항</li> <li>3. 시설물 성능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li> </ol>
		<b>제6장 보칙</b>
<p><b>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8. 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li> <li>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li> <li>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li> <li>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li> </ol>		<p><b>제33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b> 법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li> <li>2. 제10조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li> <li>3.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li> </ol>

<p>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p> <p>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p> <p>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p> <p>8. 제28조, 제31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p> <p>9. 제31조제2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p> <p>10.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p> <p>11.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p> <p>12.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 보고서</p> <p>1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lt;신</p>		
--	--	--

<p>설 2019. 8. 20.&gt;</p> <p><b>제59조(실태점검)</b>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lt;개정 2019. 8. 20.&gt;</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⑥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⑦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물의 범위 등 실태점검의 실시와 제6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p>		<p><b>제34조(실태점검 등)</b> ① 법 제59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실태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	--	---

<p>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b>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9. 8. 20., 2020. 6. 9., 2021. 3. 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li> <li>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li> <li>3. 제19조제1항·제2항·제9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li> <li>4.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li> <li>5.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li> <li>6.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li> </ol>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실적확인서</p>		<p><b>제35조(수수료 등)</b> ①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lt;개정 2020. 12. 11.&gt;</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p>
--	--	---



<p>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b>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b>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만원</p> <p>2.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50만원</p> <p>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2. 18.]</p> <p>[종전 제45조는 제17조의5로 이동 &lt;2020. 2. 18.&gt;]</p>	<p><b>제35조의2(이행강제금)</b>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2. 21.]</p>
		<p><b>제36조(규제의 재검토)</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2. 21.&gt;</p> <p>1. 제7조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 2018년 1월 18일</p> <p>1의2. 제10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2018년 1월 18일</p> <p>1의3.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p>

		<p>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2018년 1월 18일</p> <p>2.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진단 측정 장비: 2018년 1월 18일</p> <p>3. 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 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2018년 1월 18일</p> <p>② 삭제 &lt;2020. 2. 21.&gt;</p>
--	--	--